

주차장관리운영 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납부 주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여 행정 효율성과 이용자 납부편의를 증대함으로써 순환제를 확대하고, 이용자 간 이용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가. 주차장관리운영규정 제13조(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은 3개월 단위 선납을 6개월로 변경함

나. 제16조(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환급·취소)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환급 및 취소 사유 중 3항 1호의 분기별을 반기별로 변경함

※ 부과기간 변경에 따른 납부 요금 변경사항

- 주간제 : (3개월) 60천원 → (6개월) 120천원
- 야간제 : (3개월) 45천원 → (6개월) 90천원
- 전일제 : (3개월) 90천원 → (6개월) 180천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주소 : 부천시 소사로482(춘의동) 부천도시공사 주차사업부
- 이메일 : kimsh0414@best.or.kr
- 팩스 : 032-340-0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차사업부 거주자견인팀(전화 032-340-09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제조(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p> <p>① 생략</p> <p>②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은 3 개월 단위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거주자우선주차장별 여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일, 주간, 야간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p>	<p>제13제조(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은 <u>6</u> 개월 단위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거주자우선주차장별 여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일, 주간, 야간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p>

<p>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0.12.28. ></p> <p>제16조(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요금 환급 · 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략 ② 생략 ③ 사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p>1. 분기별 주차요금을 납부기간 내 납부(선납)하지 않을 경우</p>	<p>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운영 할 수 있다.</p> <p>제16조(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요금 환급 · 취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p>1. <u>반기별</u> 주차요금을 납부기간 내 납부(선납)하지 않을 경우</p>
--	--